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가. 신도시 입주 초기 등 수요가 적어 신규 버스 노선 신설이 어려운 지역에 기존 대중교통수단의 보완 수단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도입하여 대도시권 시·도 간의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나.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방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다.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의 전세버스 노선 운영을 허용하여 수도권 지역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하려는 것임.

라. 운수종사자의 영상물 시청 금지를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997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및 제4조 제1항 및 제37조제1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간에 일상적인 교통이 불편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역을 추가하고, 해당 면허 등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

나. 다수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공동이용 허용(안 제3조제2항제2호)

기존에는 개별 학교가 각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통학버스를 계약해야 하던 것을 시·도교육감 또는 다수 학교의 대표학교의 교장이 다수 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시·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 (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해소를 위해 관계 시·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약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전세버스의 노선운행 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위임

라.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 과태료 조항 신설(안 별표6 제2호)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50만원) 조항 신설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간에 일상적인 교통이 불편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역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목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계통을 정해(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행계통을 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운행하더라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

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 나. 회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소속원(다목의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관할하는 학교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공동운행을 위해 가목에 해당하는 다수의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는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소속원만의 통학목적으로 자동차

를 운행할 수 있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에 따른 교육감  
· 교육장(통학범위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 계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노선버스 이용이 불편한 주민의 출퇴근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기점에서의 출발시간이 출퇴근 시간대(오전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일 것

나. 기점, 종점 및 중간 정차지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기점과 종점이 각기 다른 시·도에 위치할 것

다.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수도권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노선버스

와의 경합·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운행지역, 운송 계약 내용 및 운행절차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2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제2호 중 “제3조제2호다목”을 “제3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조제2호라목”을 “제3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제12조의3 중 “제3조제2호가목”을 “제3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2호가목”을 “제3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제3조제2호다목”을 “제3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20조의12 중 “제3조제2호다목”을 “제3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20조의13 중 “제3조제2호다목”을 “제3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21조의4제3호 중 “제3조제2호라목”을 “제3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제21조의8제4호 중 “제3조제2호라목”을 “제3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에”를 “시내버스운송사업과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호다목”을 “제3



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중 “제3조제1호”를 각각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6 제2호머목부터 조목까지를 각각 머목부터 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법 제26조제1항제7의4호를 위반하여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	50	50	50
--	----------------	----	----	----

별표 6 제2호저목(종전의 어목)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처목(종전의 저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를 각각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커목(종전의 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3”을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4”로 하며, 같은 호 고목 1)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고. 법 제49조의8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 서 내리게 하는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5호	20	20	20
2) 법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5호	20	20	20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5호	20	20	20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5호	20	20	20
5)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5호	20	20	20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5호	10	10	10

별표 6 제2호고목(중전의 허목) 7)부터 8)까지를 각각 8)부터 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9조의8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운전중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	50	50	50
---	----------------	----	----	----

별표 6 제2호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킴으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5호			
--	--------------	--	--	--

별표 6 제2호8)을 9)로 하고, 같은 호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5호	10	15	20
-----------------------------------	--------------	----	----	----

별표 6 비고 중 “제2호나목·라목·모목 및 보목”을 “제2호나목·라목

- 보목 및 소목”으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6항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대상)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u>」 별표1에 따른 <u>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간에 일상적인 교통이 불편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역</u></p>
<p>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p> <p>1. (생략)</p> <p>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p>	<p>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p>



체와 그 출연기관·연구  
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  
이집, 「학원의 설립·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  
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 제3조에 따른 체육  
시설(「유통산업발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  
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  
기관

나. ~ 라. (생략)

<신설>

<삭제>

<삭제>

나. ~ 라.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계통을 정해(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행계통을 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운행하더라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

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나. 회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  
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와 1개의 운송계약(운입  
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  
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  
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



외한다)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소속원(다목의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관할하는 학교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공동운행을 위해 가목에 해당하는 다수의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는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소속원만의 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에 따른 교육감·교육장(통학범위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노선 버스 이용이 불편한 주민의 출퇴근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기점에서의 출발시간이 출퇴근 시간대(오전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일 것

나. 기점, 종점 및 중간 정차지가 모두 수도권에 위치

하고, 기점과 종점이 각기 다른 시·도에 위치할 것  
다.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수도권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노선버스와의 경합·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운행지역, 운송 계약 내용 및 운행절차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4조(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제4조(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  
-----  
-----  
-----  
-----  
-----  
-----  
-----  
----. 단, 제2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  
를 말한다.

1. (생략)
2.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일반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  
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  
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  
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  
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  
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  
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4. (생략)

제12조의3(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  
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1조제  
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을 말한다.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

-----  
-----.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1항제2호가목-----  
-----  
-----  
-----  
-----
3. 제3조제1항제2호라목-----  
-----  
-----  
-----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  
객자동차운송사업) -----  
-----  
-----  
----- 제3조제1항제  
2호가목-----  
-----.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  
-----

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
- ②·③ (생략)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생략)

② 법 제49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12(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법 제49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법 제49

-----  
-----  
-----.

1. 제3조제1항제1호 -----  
-----
  2. 제3조제1항제2호가목-----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3조제1항제2호다목 -----  
-----  
-----.

제20조의12(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  
-----  
-- 제3조제1항제2호다목 -----  
-----  
-----.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

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제3조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 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 2. (생략)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 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 ~ 3. (생략)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 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  
----- 제3조 제

1항제2호다목 -----  
-----  
-----.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  
-----  
-----  
-----.

1. 2. (현행과 같음)
3. ----- 제3조 제  
1항제2호라목 -----  
-----  
-----  
-----  
-----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3조 제  
1항제2호라목 -----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  
을 포함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  
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  
내버스운송사업(별표 1의3에  
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  
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 및 운행형태가 광  
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 며. (생략)

-----  
-----  
-----  
-----  
-----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  
-----  
-----  
-----  
-----  
-----

1. -----  
-----  
-----  
-----  
-----  
-----  
-----  
-----  
-----

-----  시내버스운송사업  
과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  
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

가. ~ 며.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나. (생략)

②·③ (생략)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3조(사업 면허·등록·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 -----

-----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43조(사업 면허·등록·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 5. (생략)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

그 적용)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제3조제1항제1호-----  
-----  
-----
3. ~ 5. (현행과 같음)
6. -----  
-----  
----- 제3조제1항제1호-----  
-----  
----- 제3조제1항제2호-----  
-----  
-----

<p>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p> <p>②·③ 삭제</p> <p>④·⑤ (생략)</p>	<p>-----</p> <p>-----</p> <p>-----</p> <p>④·⑤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26